

# 주간 농업·농촌 동향

## 주요 농정 이슈

과수 농가, 겨울철 재해 보장 강화  
김치지수 발표 및 시범운영 추진

##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 기획정보

필리핀 쌀 관세화 협상 동향 및 시사점

##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10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 동향 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농정 이슈\_1

## 과수 농가, 겨울철 재해 보장 강화

※ 본 자료는 2013년 1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과수 농가, 겨울철 재해 보장 강화된다」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 배 보험상품 첫 출시

- **[과수 보험상품 실태]** 사과·배·감·귤·단감·뽕은감 등 5개 과수보험은 특정 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돼 태풍(강풍)과 우박만이 주 계약으로 보장, 봄 동상해는 특약에 의해 실제 꽃눈 피해의 50%만 보상
  - 배는 겨울 및 봄철 이상기후는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미흡
- **[배 종합위험보장방식 보험상품 출시]** 겨울 및 봄철 저온·폭설·서리로 인한 배의 동해·설해·상해·냉해 등 종합적으로 보장
  - 11.18일 ~ 12.6일까지 경기도 안성·평택·남양주시지역에서 판매
  - 내년에는 판매지역을 12 사군으로 확대

〈배 재해보험 상품 비교〉

| 구 분           | 기존 상품<br>(특정위험보장방식)                   | 신상품<br>(종합위험보장방식)                                          |
|---------------|---------------------------------------|------------------------------------------------------------|
| 보장 재해         | 태풍, 우박, 봄동상해(특약)                      | 태풍, 우박, 동해, 상해, 냉해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 가입 시기 및 보장기간  | 2·3월(가입) ~ 수확기                        | 11·12월(가입) ~ 다음해 수확기                                       |
| 대상 지역         | 전국                                    | 평택·안성·남양주                                                  |
| 보험료(ha당 평균) * | 평택: 168만 원, 안성: 346만 원<br>남양주: 115만 원 | 평택: 223만 원, 안성: 512만 원<br>남양주: 148만 원                      |
| 자기부담비율        | 15%형, 20%형, 30%형                      | 좌 등                                                        |
| 보험료 국고지원비율    | 50%                                   |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등<br>(15%형 가입 시 40% 보조,<br>20%형 50%, 30%형 60%) |

주: \* 보험료율은 시군별로 관리되어 보험료율이 차이

## □ 기타 품목 보험상품 확대

- **지난 겨울과 봄 이상저온으로 냉해피해가 심했던 복숭아, 포도, 자두, 양파** (이상 전국), **복분자(고창·정읍·순창·함평·담양)** 등의 **보험상품 판매**
  - 농가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판매되는 복숭아·포도·자두·양파·복분자 보험상품의 자기부담비율 (**기존 30% → (변경) 20, 30, 40로 다양화**)

〈과수 보험금 종류〉

- 수확감소보장보험금(배·복숭아·포도·자두·양파)
  - (지급기준)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익년도 수확기 종료시점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단, 수확기 종료시점은 배 10.31일, 복숭아·포도 10.10일, 자두 9.30일, 양파 6.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과실손해보장보험금(복분자)
  - (지급기준)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익년도 수정완료시점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정작불능보장보험금(양파)
  - (지급기준)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익년도 3.31일까지 양파 식물체 피해율 70%이상이고 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며 계약은 소멸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35%
- 나무손해보장보험금(배·복숭아·자두)
  - (지급기준) 계약체결일 24시부터(단, 복숭아·자두는 12.1일 전 계약 시는 12.1일부터, 12.1일 이후 계약이면 계약체결일부터) 익년도 11.30일까지 (단, 배는 10.31일까지) 보상하는 손해로 자기부담금(복숭아 100만 원, 자두 5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주수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금

## 주요 농정 이슈\_2

## 김치지수 발표 및 시범운영 추진

※ 본 자료는 2013년 1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식품부, 김치지수 발표 및 시범운영 추진」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 개요

- (목적) 개별품목 가격이 아닌 **김치재료를 포괄하는 김장비용을 지수화**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돕고 **소비자 체감형 물가지표로 활용**
  - 김치재료 보편성 등을 고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치재료 배합 비율(13개 품목)\*을 표준 비율로 활용  
※ aT 김치재료 배합비율(4인 가족 기준,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자문): 배추 20 포기(60kg), 무 10개(18kg), 고춧가루 1.86kg, 간마늘 1.2kg, 대파 2kg, 쪽파 2.4kg, 흠생강 120g, 미나리 2kg, 갓 2.6kg, 굴 2kg, 멸치액젓 1.2kg, 새우젓 1kg, 굵은소금 8kg
  - 소비자 선호, 가격조사 빈도 등을 감안, aT 소매가격(명목가격)을 바탕으로 기준가격 산출  
※ 기준가격(213,846원): 최근 5개년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으로 동 기준가격을 김치지수 100으로 간주

## □ 주요내용

- **[2013.11월 김치지수] 91.3**, 김장철 기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김치 담그는 비용**) 195,214원, 전년 동월대비 20.1% 하락
- **[2013.10월 김치지수] 152.6**, **배추파동으로 최근 5년간 김치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
  - (**김치 담그는 비용**) 326,387원, 평년 동월대비 45.0% 증가  
※ 배추가격은 평년 동월대비 131.9% 상승하였으나 전체 비용 상승폭은 배추 상승폭보다 낮음.
- **[김치 담그는 비용 중 품목별 가격 비중]** **배추(27.6%)**, **고춧가루(19.4%)**, **굴(11.7%)**, **무(7.8%)** 순

- 배추가격 1% 상승 시 전체 김치 담그는 비용은 0.28% 상승, 고춧가루 1% 상승 시 전체비용은 0.19% 상승

〈2008~2013년 월별 김치지수〉

기준가격: 213,846원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평균    |
|-------|-------|-------|-------|-------|-------|-------|-------|-------|-------|-------|-------|-------|-------|
| 2008년 | 84.0  | 79.3  | 74.9  | 73.4  | 70.7  | 68.8  | 68.8  | 77.8  | 81.4  | 74.2  | 72.9  | 76.4  | 75.2  |
| 2009년 | 73.7  | 72.0  | 75.8  | 86.3  | 96.4  | 80.5  | 77.0  | 82.6  | 84.3  | 82.5  | 76.3  | 78.2  | 80.5  |
| 2010년 | 84.1  | 91.3  | 103.9 | 119.3 | 102.8 | 89.2  | 99.0  | 110.3 | 147.9 | 152.6 | 115.8 | 118.6 | 111.2 |
| 2011년 | 128.2 | 128.2 | 121.6 | 104.5 | 84.6  | 79.7  | 94.7  | 123.5 | 128.6 | 109.2 | 98.7  | 98.2  | 108.3 |
| 2012년 | 103.1 | 108.2 | 118.0 | 115.7 | 107.8 | 104.1 | 112.1 | 109.6 | 124.0 | 124.2 | 114.3 | 121.4 | 113.5 |
| 2013년 | 130.0 | 128.4 | 123.8 | 120.9 | 110.6 | 107.7 | 109.1 | 120.5 | 123.1 | 103.5 | 91.3  | -     | -     |

- **[운영방안]** 김치지수 산출을 위해 연구용역과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김치지수 산출 방식 검토

- aT, 17개 지역 39개 매장(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대상으로 주 1회 김장 재료 13개 품목에 대한 소매가격 조사 실시

- **[향후계획]** 농업관측정보 및 알뜰 장보기 등을 통해 **매월 1회 김치지수 공표**, 기존 aT 도·소매 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김치지수 산출을 위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14년 완료)

※ 김치수요가 큰 김장철이나 가격 변동이 심각한 시기에는 주 1회 이상 공표

- **[중장기]** 김치업체 포장 시판김치 가격 조사하여 **김치 담그는 비용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도움

- 관측정보와 연계하여 김치 담그기 비용 예측,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

## 거시경제 동향

## 201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11월 12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 2013년 10월 수출물가지수

- **[수출물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9% 하락**

※ 전년 동월대비 4.6%↓

- (농림수산물) 수산물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6% 상승(전년 동월대비 8.6%↓)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 품목의 등락〉

단위: %

| 구 분   | 전월대비                    | 전년 동월대비                 |
|-------|-------------------------|-------------------------|
| 농림수산물 | 상승 냉동참치 15.6, 신선어패류 0.4 |                         |
|       | 하락                      | 냉동참치 -11.7, 신선어패류 -19.5 |

- (공산품) 화학제품 및 제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9% 하락 (전년 동월대비 4.5%↓)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 구 분                 | 가치지    | 전월대비           |                |                |                   | 전년 동월대비          |                 |                 |                   |
|---------------------|--------|----------------|----------------|----------------|-------------------|------------------|-----------------|-----------------|-------------------|
|                     |        | 7월             | 8월             | 9월             | 10월 <sup>1)</sup> | 7월               | 8월              | 9월              | 10월 <sup>2)</sup> |
| 총 지 수 <sup>1)</sup> | 1000.0 | -0.9<br><-0.1> | -0.7<br><0.1>  | -2.4<br><0.2>  | -1.9<br><-0.2>    | -1.6<br><0.2>    | -2.2<br><-0.6>  | -4.7<br><-0.9>  | -4.6<br><-0.6>    |
| 농 립 수 산 품           | 4.3    | -4.7<br><-3.3> | -1.0<br><-0.6> | -3.5<br><-0.5> | 2.6<br><4.4>      | -17.4<br><-10.2> | -16.4<br><-9.6> | -14.0<br><-4.6> | -8.6<br><-1.3>    |
| 공 산 품               | 995.7  | -0.9<br><-0.1> | -0.6<br><0.1>  | -2.4<br><0.2>  | -1.9<br><-0.2>    | -1.5<br><0.3>    | -2.1<br><-0.5>  | -4.7<br><-0.9>  | -4.5<br><-0.6>    |
| 섬유·가죽제품             | 41.9   | -1.1           | -0.7           | -2.7           | -1.0              | -1.1             | -0.7            | -3.1            | -2.8              |
| 석탄·석유제품             | 123.9  | 1.5            | -0.2           | -2.9           | -2.0              | 2.2              | -6.1            | -9.4            | -8.1              |
| 화학제품                | 173.8  | -0.7           | 0.2            | -1.9           | -2.6              | 0.0              | 0.1             | -3.1            | -4.8              |
| 제1차금속제품             | 95.7   | -2.3           | 0.8            | -2.6           | -2.3              | -11.1            | -8.8            | -12.0           | -12.3             |
| 일반기계제품              | 90.8   | -0.9           | -0.8           | -2.6           | -1.5              | -2.1             | -2.2            | -4.7            | -4.6              |
| 반도체·전자표시장치          | 125.8  | -0.9           | -2.7           | -2.5           | -2.2              | 3.5              | 4.5             | 3.3             | 3.9               |
| 통신·영상·음향기기          | 59.6   | -2.1           | -1.3           | -1.4           | -2.0              | -5.7             | -4.8            | -6.7            | -5.0              |
| 수송장비제품              | 111.3  | -0.9           | -0.6           | -2.6           | -1.3              | 1.0              | 1.2             | -1.7            | -1.1              |

주: 1)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2) 당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 □ 2013년 10월 수입물가지수

### ○ [수입물가]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과 원화 환율이 내려 전월대비 2.4% 하락

※ 전년 동월대비 7.3%↓

- (원자재) 전월대비 3.6% 하락(전년 동월대비 6.5%↓)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2.1% 하락(전년 동월대비 12.4%↓)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 품목의 등락〉

단위: %

| 구 분   |    | 전월대비                                                  | 전년 동월대비                                           |
|-------|----|-------------------------------------------------------|---------------------------------------------------|
| 농림수산물 | 상승 |                                                       |                                                   |
|       | 하락 | 커피 -8.6, 콩 -4.5, 천연고무 -3.2, 옥수수 -0.7, 원면 -2.5, 밀 -1.1 | 커피 -24.4, 천연고무 -23.9, 밀 -17.1, 콩 -13.5, 옥수수 -21.7 |

- (중간재) 전월대비 2.0% 하락(전년 동월대비 8.6%↓)

- (자본재 및 소비재) 전월대비 각각 1.2%, 1.1% 하락(전년 동월대비 각각 7.5%, 3.0%↓)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 구 분                 | 가중치           | 전월대비           |               |               |                   | 전년 동월대비        |                |                |                   |
|---------------------|---------------|----------------|---------------|---------------|-------------------|----------------|----------------|----------------|-------------------|
|                     |               | 7월             | 8월            | 9월            | 10월 <sup>2)</sup> | 7월             | 8월             | 9월             | 10월 <sup>2)</sup> |
| 총 지 수 <sup>1)</sup> | 1000.0        | -0.8<br><0.1>  | 0.6<br><1.3>  | -2.3<br><0.4> | -2.4<br><-0.8>    | -4.3<br><-1.8> | -5.3<br><-3.0> | -8.1<br><-3.8> | -7.3<br><-2.8>    |
| 원 자 재               | 346.4         | -0.2<br><0.5>  | 1.8<br><2.7>  | -2.2<br><0.5> | -3.6<br><-1.8>    | -3.7<br><-2.2> | -5.8<br><-4.4> | -8.2<br><-5.0> | -6.5<br><-2.8>    |
| 농림수산물<br>광 산 품      | 21.6<br>310.3 | -3.8<br>0.0    | -1.3<br>2.1   | -2.7<br>-2.1  | -2.1<br>-3.8      | -7.2<br>-3.2   | -10.0<br>-5.4  | -11.4<br>-8.1  | -12.4<br>-6.1     |
| 중 간 재               | 467.1         | -1.2<br><-0.3> | 0.1<br><0.8>  | -2.4<br><0.4> | -2.0<br><-0.3>    | -5.4<br><-2.6> | -5.5<br><-3.0> | -8.7<br><-4.0> | -8.6<br><-3.8>    |
| 자 본 재               | 94.7          | -1.4<br><0.0>  | -0.2<br><0.0> | -2.9<br><0.0> | -1.2<br><-0.1>    | -5.5<br><0.0>  | -5.0<br><-0.1> | -7.8<br><-0.1> | -7.5<br><-0.3>    |
| 소 비 재               | 91.8          | -0.4<br><0.4>  | -0.3<br><0.1> | -2.0<br><0.2> | -1.1<br><0.0>     | 0.7<br><2.6>   | -0.3<br><1.1>  | -3.2<br><0.3>  | -3.0<br><0.4>     |

주: 1)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2) 당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 기획정보

## 필리핀 쌀 관세와 협상 동향 및 시사점

※ 본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2013.11월호 「필리핀 쌀 관세와 유예 추가 협상동향과 시사점」 및 언론동향을 참고하여 동향분석실에서 요약작성한 것임.

## □ 추가협상 개요 및 경과

### 1) 필리핀 쌀 관세와 협상 개요

#### ○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필리핀의 쌀 관세화 3차 유예를 위한 의무 면제(waiver)<sup>1)</sup> 협상을 농업분야의 중요 이슈 중 하나로 논의

- 1차 관세화 유예 이후, 2004년에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sup>2)</sup>”에 의거 추가 협상을 통한 쌀 관세화 2차 유예('05~'12) 추진

- 7년간의 2차 관세화 유예 종료(2012.6.30.)

- DDA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식량수급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필리핀은 소규모 쌀 농가 소득 보장과 식량안보 확보 등을 위해 3차 추가 유예 추진 결정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 현황〉

| 구 분      | 1차(특별대우)     | 2차(특별대우)    | 3차(의무면제)    |
|----------|--------------|-------------|-------------|
| 기 간      | 10년('95~'04) | 7년('05~'12) | 5년('12~'17) |
| MMA(천 톤) | 60 ~ 239     | 350         | 350 ~ 805   |
| MMA (%)  | 50           | 40          | 35          |

### 2) 필리핀 3차 추가 협상 경과

#### ○ 농업위원회 협상개시 의사 표명(2011.11.22)

- 관세화 추가 유예를 위한 협상개시 통지문<sup>3)</sup>에서 필리핀은 자국 쌀 수정

1) 국제경제조약에 의해 설치된 감독기관(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이 가입국에 대해 부여하는 일반적인 의무면제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 가트에 의하면 체약국단(締約國團)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트에 의해 체약국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체약국단의 2/3의 다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함(가트 25조 5항). WTO 협정은 이 의결요건을 3/4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의무면제의 결정에는 조건과 기한 제시하고, 매년 각료회의의 심사를 받는 것을 결정하여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WTO 협정 9조).

2)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년도가 종료된 이후 제7항에 명시된 특별대우의 계속 가능성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이행기간 개시 이후 제10차년도 그 해의 시간 범위 내에 개시되고 종결됨.

3) WTO 문서 G/AG/W/91 참조.

이행계획서 5의 1조<sup>4)</sup>를 추가 유예 근거로 제시하고, 2012.2.22일까지 관심 있는 회원국들의 양자협의 참여 요청

※ 협상 참여국: 미국, 중국, 태국,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호주, 엘살바도르, 캐나다 등 9개국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에 의거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함을 근거로 필리핀의 추가 관세화 유예 연장에 불가 입장**

※ 필리핀이 추가 유예의 근거로 제시한 쌀 수정 이행계획서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대

#### ○ 상품무역이사회에 의무 면제 안건 상정(2012.3.30)

- 필리핀은 자국의 쌀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기 위해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을 포기,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제9의 3조에 근거하여 의무면제(waiver) 요청
- 의무면제 기간을 5년(2012.7~2017.6)으로 제시, 동 기간 중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수준 및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 국가별 쿼터 등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함에 따라 공란 제출

#### ○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와의 쌀 이외 보상안에 대한 합의 지연(2013.7.11)

-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쌀 관심국들은 이미 쌀 관련 보상이 합의되었음에도 미국 등의 합의 지연으로 타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 촉구
- 미국, 캐나다 등도 필리핀 측에 이미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나 경과되었다며 필리핀 측에 조속한 타결 요구

#### ○ 쌀 관련 양허안 제시(2013.10.18)

-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의무면제 요청 안건<sup>5)</sup>에 쌀 의무수입 물량, 쿼터 내 관세율 인하, 국별 쿼터 등 자국의 쌀 관련 양허안 제시
  -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은 쌀 관세 유예 자체에 대해 유보적
- 쌀 관련 양허안 공개 이유는 미국, 호주, 캐나다와의 합의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이들 쌀 이외 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 작용 기대

4) 쌀에 대한 특별대우가 지속될지 여부는 DDA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 DDA 협상 결과가 발효한 이후 특별 대우가 종료될 경우, 관세율은 DDA 협상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되어야 함.

5) WTO 문서 G/C/W/665/Rev.2(국별 쿼터 미포함) 및 G/C/W/665/Rev.3.

## □ 평가 및 전망

### 1)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추진 이유

#### ○ 의무 수입확대에 따른 필리핀 국내 생산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

- 이번 5년간 추가 유예 요청하면서 의무수입량 약 80만5천톤 수준으로 늘리더라도 연간 전체 수입량 범위 내에 있어서 영향 미미
  - ※ 필리핀은 현재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량을 포함하여 연간 100~200만 톤 쌀 수입

#### ○ 필리핀은 쌀이 중요한 정치제로서, 소규모 쌀 생산농가에 대한 정치적 고려로 작용, 국내적으로 관세화 추가 유예에 대한 이견도 있는 상황

<필리핀 쌀 수급상황>

단위: 천 톤, %

| 구 분  | 생 산(a) | 수 입   | 수 요(b) | 연말재고  | 자급률(a/b) |
|------|--------|-------|--------|-------|----------|
| 2008 | 10,997 | 2,432 | 12,961 | 2,639 | 84.8     |
| 2009 | 10,633 | 1,755 | 12,398 | 2,629 | 85.8     |
| 2010 | 10,315 | 2,378 | 11,898 | 3,424 | 86.7     |
| 2011 | 10,911 | 707   | 12,415 | 2,627 | 87.9     |

자료: www.bas.gov.ph/publication/Selected Statistics on Agriculture 2012.

### 2) 향후 필리핀 협상 전망

#### ○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2012.6.30일)됨에 따라 WTO 협정 위반상태이며, 유예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협상 참여국의 압박 불가피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쌀 이외에 **다른 상품 무역에서의 추가 양보 요구**하며 쌀 관세 유예 자체에 대해 **유보적 태도**로 합의 도출 실패(2013.10.18. WTO 상품무역이사회)

#### ○ 이번 추가 유예 요청은 한차례 연장만 허용된 농업협정이 아니라 WTO 협정에 따른 의무면제를 통해 쌀 관세를 추가 유예한 것이어서 상당한 대가 예상

- **의무수입물량 2배 이상 증량, 관세인하(40% → 35), 쌀 이외 다른 상품무역 양보요구 수용** 등을 골자로 한 쌀 관련 양보안은 **2014.3월 상품무역 이사회나 임사회** 등에서 **추가 합의** 전망

※ 일부 국가, 필리핀에 국별쿼터(수출국에 일정한 의무수입량을 배정하는 제도) 요구

## □ 시사점

-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을 활용**한 추가 유예는 법적·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이 명확화
- 필리핀 쌀 의무면제 협상 사례를 통해 쌀 관세화 종료 이후 현재의 의무수입량을 유지하는 **“현상유지(Stand-Still)”**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만성적인 쌀 부족국가인 필리핀의 경우 의무수입량을 약 80만 톤 확대하더라도 필리핀 국내 영향이 미미한 반면 쌀을 자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우와 **근본적인 여건 차이**가 있음을 인정
  - ※ 우리나라 의무수입량 (2005년) 20만5,000톤 이후 매년 약 2만 톤씩 늘어 2014년 말 기준 409천 톤 수준, 안정적인 식량 안보가 중요
- 우리나라는 **국민의 식생활 구조 변화**로 **연간 1인당 소비량\***이 많이 **감소**했지만 쌀은 **국민의 주식**이고, **농가 소득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 제고
  - ※ 2012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69.8kg으로 사상 최저치, 가장 많았던 1970년 136.4kg 대비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
- 우리나라도 관세화 유예를 요구할 경우, **상당한 대가 제공이 불가피**하며 **유예연장을 할 실의 여부에 대해 신중함 필요**
  - ※ 필리핀의 쌀 의무면제 협상과정에서 미국, 호주, 태국 등 협상참여국들은 우리나라 쌀 관세화 여부에도 상당한 관심 표명
- 필리핀의 쌀 관세화 추가 유예를 위한 의무면제 협상은 2014년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쌀 관세화 도입 여부 등에 대해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정책적 결정 도모
  - ※ 국내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쌀 수입개방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 관세화 유예 연장, 관세화 이행에 대한 정부 방침 결정되지 않은 상황
  - 정부 입장, 국내외 쌀값 차이가 줄어들어 높은 관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쌀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수요가 없을 것이라 전망
    - ※ 1999년 쌀을 관세화한 일본은 의무수입물량 외에 고율 관세 수입쌀 연간 400t에 불과, 2003년 관세화한 대만도 고율관세 수입은 거의 없었다는 사례 근거

## ※ 참고문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2013.11월호 \_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추가협상동향과 시사점」
- 국민일보 보도자료 \_ 「줄어드는 쌀밥 열러가는 시장 무너지는 農心」 (2013.11.6)
- 농민신문 보도자료 \_ 「필리핀, 쌀시장 전면 개방 위기」 (2013.10.23)
- 연합뉴스 보도자료 \_ 「한국, 쌀시장 개방 유예기간 연장 부담 클 듯」 (2013.10.19)
- 아시아투데이 보도자료 \_ 「쌀시장 개방 유예기간 연장…한국, 부담 클 듯」 (2013.10.19)
- 광주일보 보도자료 \_ 「미친 개방 안 돼」 쌀쌀한 농심... “마를 수 없다” 고민하는 정부」 (2013.9.10.)

## <국가별 쌀 관세와 유예 연방>

- [쌀 관세화 유예]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WTO가 출범하면서 농산물도 “관세화 원칙”에 따라 개방되었으나, 우리나라와 필리핀, 일본은 쌀에 관한 관세화 유예, 의무 수입물량 수입
- [한국-필리핀] 10년간의 1차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2004년에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에 의거 추가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 2차 유예
  - 10년 간 2차 유예를 한 한국은 2014년 말까지 약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
- [일본] 1차 관세화 유예 종료기간 전인 1999년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첨부에 따라 계산된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up>6)</sup>로 쌀 시장 개방
- [대만] 2002년 WTO에 가입, 2002년 1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한 후 국내 논의를 거쳐, 쌀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판단, 2003년 쌀 관세화 시행

|                  |     | 필리핀            | 한국             | 일본                              | 대만       |
|------------------|-----|----------------|----------------|---------------------------------|----------|
| 특별대우<br>(1차)     | 기간  | 10년( '95-' 04) | 10년( '95-' 04) | 6년( '95-' 00)                   | 1년( '02) |
|                  | MMA | 60-239천 톤      | 51-205천 톤      | 426-852천 톤                      | 144천 톤   |
|                  | 세율  | 50%            | 5%             |                                 | 0-25%    |
| 특별대우<br>(2차)     | 기간  | 7년( '05-' 12)  | 10년( '05-' 14) | * '99년<br>조기관세화      * '03년 관세화 |          |
|                  | MMA | 350천 톤         | 225 ~ 409천 톤   |                                 |          |
|                  | 세율  | 40%            | 5%             |                                 |          |
| 의무면제<br>(waiver) | 기간  | 5년( '12-' 17)  |                |                                 |          |
|                  | MMA | 350-805천 톤     |                |                                 |          |
|                  | 세율  | 35%            |                |                                 |          |

6)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약속된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것임.

## 농정 여론 동향

##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1월 11일~15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 미국, 쇠고기 수입 규제완화...한·일 시장개방 압박 예고

-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 11.1일, “**광우병 관련 소고기 수입 규제 현대화, 국제수역기구(OIE)\*가 정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 홈페이지 게시. 이번 조치는 **자국 규제 완화를 근거로 교역 상대국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재. 유럽연합(EU)에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 협정(TTIP)\*\* 협상 촉구, **한국일본 등에는 30개월 이상을 포함해 뼈 없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명분**으로 작용 예상

※ 동물·가축 위생에 대한 국제 기준과 국가별 등급을 정하는 국제기구. 국가별 광우병 위험 등급을 위험이 경미한 위험무시국(1단계)과 위험통제국(2단계), 아직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위험미결정국(3단계)으로 나누고 위험무시국과 위험통제국의 쇠고기는 월령과 부위에 따른 수입 제한을 하지 말도록 권고, 미국은 5월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음.

※※ 미국과 유럽연합은 2013.6.17.일, 북아일랜드 G8 정상회담에서 TTIP 협상 개막 선언, 2015년 협상 완료 목표. 미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FTA)인 TTIP는 △관세, 서비스교역, 투자, 정부조달에 관한 시장접근, △글로벌 교역 규범 강화를 의미하는 규제와 비관세장벽으로 구성

자료 : 문화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연합뉴스·한국일보·KBS·YTN(2013.11.13.) / 경향신문·세계일보·조선비즈(2013.11.14.)

### □ 배추 공급과잉 해소 위해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 농식품부, 11.8일, 2013년 가을배추 유통협약식\*, 김장용 가을배추 3만t **산지소비자단체·유통인·정부가 참여한 ‘농·소·상·정 유통협약’** 통해 전격 시장격리. 10.23일, 정부,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발표한 이후에도 산지거래가 살아날 기미가 없고 도매가격 하락세가 계속된 데 따른 결정. 협약에 따라 산지는 11.8~12.20일까지 **배춧값이 도매가격 수급조절매뉴얼 상의 경제단계(한포기 당 895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3만t ‘시장 격리’\***. (농업인) 저급품 출하 자제, (소비자) 김치 더 담그기 등 소비

촉진 운동 전개, (유통인) 고품질 배추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 강화, (정부) 수급안정대책 종합적 추진. 올 가을배추 생산량 164만4,000t. 보름 전 내놔던 예상 최대치(162만3,000t)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 평년(146만2,000t)보다 18만2,000t(12.5%), 지난해(129만8,000t)보다 무려 34만6,000t(27%)이나 많은 물량이 공급돼 큰 폭의 값 하락 불가피. **(긍정적) 산지와 유통인 등이 합심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신호’** 시장에 전달, **(부정적)** 3만t이라는 물량은 평년대비 공급과잉분의 6분의 1, 지난해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해 **가격안정 시키기엔 역부족**

※ 산지폐기가 아니라 다 자란 배추를 수확하지 않는 출하정지를 뜻하며, 이후에도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5만t 추가 격리

자료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2013.11.11.) / 원예산업신문(11.13.) / 한국농어민신문(11.14.)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_「가을배추 공급과잉에 대비하여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2013.11.9.)

### □ 유제품 가격인상, 유제품 소비 비슷, 원유생산량 감소

- **유제품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소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원유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해 향후 원유수급 불균형 우려.** 유업계에 따르면 메이저 유업체들, 빠르면 11.18일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생크림, 버터, 연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가공식품 가격 약 10% 인상.** 이에 따라 원유값 인상 이후 유업체들이 9월 말부터 발효유 등 제품 가격을 10% 안팎으로 일제히 올리면서 시작된 유제품 가격 인상 단행 마무리. 이와 관련 유제품 가격인상 속에서도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소비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원유생산량은 8월 연동제 시행 후 오른 원유값으로 농가들의 생산의지가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 원유값 **인상돼 농가들의 생산의지가 올라갔음에도 원유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향후 균형 있는 수급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

※ 전국 원유생산량...올 들어 4월까지의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5월부터 생산량 줄어들기 시작해 7월부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 11월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가량 감소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11.14.)

## □ 친환경인증축산물, 마구잡이 유통에 ‘답답’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고도 **일반 축산물과 구분 없이 유통**돼 이에 대한 개선 요구. **축산물공판장 등 출하 시 경매과정 중 표시법 없고, 이력 추적정보에도 표시 안 돼** 일반 축산물과 동일. **(예1\_농가)**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받고도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물량을 제외, 일반축산물로 유통, 축산물공판장 출하할 경우 경매과정에서 별도로 무항생제 축산물 표시 불가,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력추적정보에조차 무항생제 한우라는 표시 안 돼\*. **(예2\_한우영농조합)**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에 납품하는 물량 제외, 일반 축산물과 구별 없이 한우 유통.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에 따르면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을 출하하려는 때는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인증표시. 하지만 일반 농산물과 달리 축산물은 도축과 가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계란 등을 제외, 인증사업자가 직접 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 친환경축산물인증을 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결과, 직접 판매할 경우 친환경축산물인증 홍보 가능. 하지만 일반 유통경로를 통해 유통시킬 경우 유통업자가 인증마크를 붙이게 되는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방법 무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11.14.)

## □ 농산물 비축사업...국내산 중심 돼야

- 국회 예산정책처,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한 **농가소득증대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 농산물 비축사업\***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려면 **국내 농산물 위주로 비축, 수매가 현실화** 주장 제기. 2012년 비축농산물 39만8,000t 중 수매 2만3,000t(5.8%), 나머지 37만5,000t(94.2%) 수입. 비축사업의 목적이 국내 생산농가 보호와 소비자 물가안정에 있지만, **대부분 수입 농산물로 채워 농가 도움 안 돼\*\***, **정부 매입단가 너무 낮아 국내산 수매 저조** 정부가 장기적인 고려 없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농산물 비축사업에 활용, TRQ 농산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만큼 **국내산 농산물 수매단가 및 수매물량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반영 필요**

※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을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해 비축한 뒤 시장가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제도

※※ 2011년 국내산 콩 1만t 수매 비축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수매되지 않았고, 정부가 제시한 수매가격(1kg당 3,168원)이 당시 도매가격(6,646원)의 절반에 불과.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2012년 수매단가를 500원 오른 3,618원으로 책정, 결국 국내산 콩 수매는 이뤄지지 않음.

자료 : 농민신문(2013.11.13.)

## □ 도매시장 관련 주요 내용

- **[도매시장 최초 구매자 신고제 시행]** 서울시농수산물공사, 11.1일부터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구매자 대상으로 **구매자신고제\* 운영. 전국도매시장 중 최초**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자신고제가 운영돼 **시장 내 만연해 있는 외상거래 개선과 농수산물이력관리 가능**할 전망. (장기적) 가락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매자 결제 전용카드 도입도 계획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합리적 결제 시스템 운영으로 외상거래에 따른 불필요한 **유통비용 축소,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 기대. 서울특별시도매시장 조례에 제도적 근거 마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구매자 신고제 **단계적 추진으로 점차 확대강화\*\***할 계획

※ 구매 고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관리·이용, 현대적 고객관리 기법을 통한 우수고객 유치 등 시장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도매시장 내 유통인과 구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용기반 구축하고 농수산물이력관리도 가능

※※ (현재) 시행 초기로 자율신고제로 운영, (향후) 신고율 제고를 위해 신고자 전용 주차 공간 제공 및 주차료 차등 부과 등 인센티브 제공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11.11.) / 원예산업신문(2013.11.13.)

- **[도매시장 최소 출하단위 과일 펠릿당 600kg 될 듯]** 2015년부터 농가들이 서울 가락강서도매시장, 경기 구리도매시장 등 **주요 공영도매시장에 과일 출하할 때는 최소 600kg 이상 물량을 한 단위로 펠릿에 실어 보내야 출하 가능**할 전망. 앞서 정부,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주요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과일은 2015년부터, 채소는 2016년부터 ‘농산물 최소출하단위’ 시행 예고. 감귤사과배 등 과일의 경우 최소출하단위 펠릿당 600kg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에서 주요 과일류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락강서시장의 최근 3년간 반입물량 정보 분석을 통해 펠릿당 최소출하단위의 적정 기준 산출, 그 결과

감귤·사과·배·복숭아·참외·단감·토마토 등 7개 품목은 600kg, 수박 560kg, 팽이버섯 550kg, 포도 400kg 등으로 각각 제시

※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최소출하단위 세부계획 마련을 위해 가천대 산업경영공학과 한관순 교수팀에게 연구용역 의뢰

자료 : 농민신문(2013.11.15.)

## □ 콩값 저지 위해 수매량 확대

○ 농식품부, 11.11일, 전국 지자체와 농협중앙회·AT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콩 수매량 기존 3,128t → 최대 8,500t까지 확대**. ▲수매 대상 농가…기존 3,128t의 경우 지역농협과 약정을 맺은 농가, 추가되는 5,372t은 비약정 농가 대상. ▲수매 가격…기존 약정물량(3,128t) 3,868원(대립종 백태 상품 1kg 기준), 추가 물량 3,843원. ▲수매 기간…11월 말까지. ▲**콩값 저조로 수매량 확대**…현재 콩 산지 가격은 경북 1kg당 3,600~4,000원, 전남북지역 3,300~3,500원, 콩 주산지 충북 괴산군 불정면은 3,500원대로 지난해 6,000원 선에 견줘 크게 하락한 상황. 이는 **올해 생산량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동반성장위원회가 **두부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주)풀무원(대상주) 등 대기업에 납품되던 **두부 원료용 국산 콩의 판로가 막혔기 때문**. 현재 콩 산지가격과 농식품부가 제시한 수매가격을 고려하면 상당 물량이 수매로 몰릴 전망. ▲**문제는 수매량…산지**, 이번에 수매하기로 한 8,500t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 국산 콩을 사용하면 대기업 이든 중소기업이든 두부 생산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콩 저울관세할당(TRQ) 물량을 배정할 때 국산 콩 사용량에 따라 배정량에 차등을 두는 장치 필요

※ 올해 콩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만5,000~3만2,000t 많을 것으로 전망돼 8,500t으로는 콩값 안정에 한계

자료 : 농민신문(2013.11.15.)

## □ 로컬푸드 범위 관련 산지 및 약계·소비자단체 입장

- 농협, 11.7일, ‘로컬푸드 자문위원 현장간담회’,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의 취급 여부 문제 집중 논의
  - 로컬푸드직매장, 그 지역의 **농산물을 농가가 직접 포장하고 가격을 결정한 뒤 매장에 운송 판매**한다는 점에서 영세 소농을 위한 보완 유통망으로 기대
  - 반면 한자리에서 모든 것을 구매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구매성향 고려**해,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관심사
  - **(산지)** 인근지역 농산물까지 판매 필요 ↔ **(학계·소비자단체)** 본래의 취지 살려야
- 외국처럼 로컬푸드의 범위를 행정구역이 아닌 거리개념 도입, 로컬푸드의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산지관계자 입장]

- **로컬푸드 개념**을 보다 **넓게** 해 **취급 농산물의 범위 확대** 주장
  - 현재 시·군 단위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로컬푸드의 범위를 인근 시·군, 나아가서는 로컬푸드 직매장간 협업형태로 확대
  -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맞출 수 없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

### [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 입장]

- 산지의 어려움 공감하면서도 로컬푸드직매장이 **당초 추구해온 정체성 구현**하는 데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
  - 유통비용 절감, 영세소농의 판로를 확보한다는 로컬푸드직매장의 설립 취지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 [대안 제시]

- **로컬푸드직매장 간 자매결연·연합**을 통해 **과부족 농산물을 서로 공급**하는 체제 마련
- **로컬푸드 개념 법제화** 통해 **산지 혼란 축소** 제시

자료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2013.11.11.)

## 연구 지원 정보

## 2013년 10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 본 자료는 2013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10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5.4억\$ 달성 - 전년 동월대비 12.2% 증가 -」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 총괄

#### ○ [농림축산식품 수출] 5.4억\$, 전년 동기대비 12.2% 증가

- (부류별) 신선농식품 1.2억 불, 가공식품 4.2억 불, 전년 동기대비 각각 15.6%↑, 11.3%↑
- (국가별) 미국(9.2%), 홍콩(39.8%), 아세안(24.8%), EU(10.2%) 증가한 반면 일본(△4.3%), 중국(△0.1%)은 감소

#### ○ [수출 증가 원인] 과실채소류의 본격적 출하 시작, 유자차, 버섯류 등 수요 증가, 중국 국경절 특수로 인한 인삼류 수출 증가

### □ 부류별

#### ○ [신선농산물] 인삼(129.6%), 파프리카(58.0%), 배(21.1%) 등은 증가한 반면, 화훼류(△54.4%), 김치(△12.7%) 등은 감소

- (인삼류) 10월 초 국경절 등 명절 수요 증가로 수출물량이 확대, 홍콩 지역 또한 업체들의 꾸준한 시장개척으로 당월 수출 증가
- (파프리카) 10~12월 겨울 파프리카 출하 시작과 홍콩, 대만 등으로의 시장다변화 노력으로 수출 증가
- (배) 2013년 작황이 양호해 대만-홍콩 등으로 수출 증가하였으나, 미국은 중국산 배가 본격적으로 유통되면서 수출이 크게 감소
- (화훼류) 주 수출국인 일본의 엔저현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와 생산량 감소로 수출 지속 감소

#### ○ [가공식품] 음료(31.6%), 비스킷(17.0%) 등은 증가한 반면, 자당(△10.3%), 소주(△0.6%) 등은 감소

- (음료) 에너지 음료 및 바나나우유 등 수출 증가(중국), 최근 FDA 표기 문제로 엄격한 통관절차에 따라 과즙음료 수출 감소(미국). 생수 및 탄산수(캄보디아), 우유탄산음료 인기(러시아)로 수출 증가
- (비스킷) 한국산 프리미엄 과자류의 중화권 수출 상승, 미국의 수요 확산으로 수출 큰 폭 증가
- (자당) 국제원당가격 하락으로 수출물량은 늘었으나 수출금액은 감소
- (소주) 주 수출국인 일본, 저도주 및 무알콜 음료 선호현상 확산되며 수출 감소한 반면, 중국, 대도시 젊은층 중심의 소비 확산으로 수출 증가

### □ 국가별

#### ○ ASEAN(24.8%), EU(10.2%), 미국(9.2%) 등은 증가한 반면, 일본(△4.3%), 중국(△0.1%)은 감소

- (ASEAN) 전반적인 수출 호조, 특히 미얀마, 라오스 등의 수출 증가  
※ 증가품목: 커피조제품, 물, 라면, 닭고기 / 감소품목: 단감, 비스킷
- (EU) 최근 EU 경제성장률이 (+)로 전환되며 점차 안정권으로 들어섬에 따라 농식품 수출도 증가  
※ 증가품목: 차, 마태조제품, 막걸리, 초코렛, 카레, 빵, 오이, 비스킷, 음료 등
- (미국) 중남미 시장개척, K-pear(한국산 배) 종합 홍보 추진하는 등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추진  
※ 증가품목: 껌, 라면, 비스킷, 밤 / 감소품목: 배, 음료

#### <2013년 10월 국가별 농식품 수출 현황>

단위: 백 만\$, %

| 국 가   | 일본    | 중국   | 미국   | 러시아  | 홍콩   | 대만   | ASEAN | EU   |
|-------|-------|------|------|------|------|------|-------|------|
| 수 출 액 | 114.4 | 94.7 | 50.7 | 23.8 | 30.6 | 25.7 | 83.7  | 25.3 |
| 증 감 율 | △4.3  | △0.1 | 9.2  | 39.8 | 39.8 | 47.3 | 24.8  | 10.2 |
| 수출비중  | 21.2  | 17.5 | 9.4  | 4.4  | 5.7  | 4.8  | 15.5  | 4.7  |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